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고 병 준 의원)

의안 번호	25-19
----------	-------

발의연월일 : 2025. 3. .

발 의 자 : 고병준, 권영숙, 권인순,
김승수, 남해석, 오욱자,
한선미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상위법의 규정에 부합되게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계법령 폐지에 따른 적용법령의 개정 (안 제9조)

3. 관계법령

- 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2
- 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5. 2. 26. ~ 3.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 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 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u>」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p> <p>2. ~ 4. (생 략)</p>	<p>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 ----- ----- ----- -----.</p> <p>1. 「<u>대기환경보전법</u>」 제2조제 <u>16호</u>----- -----</p> <p>2. ~ 4.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5.>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1. 4. 5.]

제6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녹색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4232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의 녹색제품 여부 확인
2.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확인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적절성 검토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확인
5. 녹색제품의 기술개발·생산 및 판매 실태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6. 녹색제품 구매제도의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 양성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업무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관: 「물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본조신설 2014. 3. 1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서울특별시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환경녹지국 맑은환경과 배선희
연 락 처	02-3153-9252